



[ 2014.7.22.] [ 25486 , 2014.7.21., ]

( ) 044 - 215 - 5911

1

1 ( ) 「 」 .

2 ( ) 「 」 ( " " ) ( " " ) 3 2  
" ) ( " " )

- 1.
- 2.
- 3.

3 5

3

30

4

30

4

「

3 ( )  
( " " )

- 1. 11 1 ( " " ) .
- 2. . 가
- 3. .
- 4. .
- 5. .

1 3

[ 25486 (2014.7.21.) 2 2017 11 30 ]

4 ( . ) 11 4 .  
( " " )

- 1.
- 2.
- 3.
- 4.

11 6

( " . " )

가

1 5

5 ( ) 13 3 "

"

- 1.
- 2.
- 3.
- 4.

가

가

가

2

6 ( ) 15 1

7

- 1.
- 2.
- 3.
- 1.
- 2.
- 3.
- 4.

(議事)

3

議)

가

15 2

3

(開

(記名捺印)

71 1

" " " " , " " " "

1 4

7 ( ) 15 1

( " . " )

15 1

71 1 1 2 .  
" " " " .

8 ( ) 15 2 1 . 2 3  
7 1 20

가 (算入)

7 1  
15 20  
14  
15

- 1. 가
- 2.
- 3. 2

71 2 1 1 3  
" " " " " " " "

9 ( ) 31 1 " " 200 .

10 ( ) 44 4 ( 79 , "  
" " " , " " " )

- 1. 3 2 , 3 2 ( )
- 2. 가 10
- 3. 가

11 ( ) 46 2 .

- 1. (在庫) 가
- 2. 가 , 「
- 3. 」 2 4 .
- 4. , 「 」 4
- 5.
- 6. (公衆)
- 7. .

8. (「 」 2 4 ) 가 ( " " )  
, 1 3 ) (總供給高) 100 5  
1 (

1 ) 6

9. 가

10. 3 2 3 2 3

1

11.

81 1

1

1 " " " , 1 2 5 " "

" " , 8 " " " , 9 10 "

" "

"

12 ( ) 49 2( 82 , " "  
" " , " " " ) 1 "

1. 가 200

2. ( 52 2 )

30

가 1 1 가 200

1

3

49 2 1

49 2 2

13 ( ) 56 6 가

1. 5 6

2. 가

3.

56 6 가 가

2

가

60

가

60

2 가

가

3

14 ( ) 60 2 4 " "

60 2 1 ( " " )

[ : 2014.12.1.] 14

15 ( ) 60 2 6

1

8 1 3

[ : 2014.12.1.] 15

---

16 ( " " ) 80 2( 115 2 ) 2 , 가

가  
1. 가 10

2. 1  
80 2 2

가 가

2 가 60  
가 , 가  
60 2 가

3  
가

80 2

가  
1. 1 가

2. 2

1.  
2.  
3.

80 2 2 가 가

7 가 3 5

3

17 ( ) 85 1 가  
7

1.  
2.  
3.

1.  
2.  
3.  
4.

3 , 85 2  
가 3

114 1 " " " , " " " " 1 4  
" " " " " "

18 ( 가 ) 85 1 가  
가  
114 1 가 1  
" " " . "

19 ( 가 ) 85 1 가  
1. 85 2 ( "  
" )가 5  
2. 93 1 , , ,  
가  
1 가

1. 1 (個所) 가 500  
2. 1 5 , 25 1 2 6 8

3. 1 10 , 2 가  
가 2

10  
4. 1 100 50 ,  
100 50

5. 85 1 가 가  
" " " " ( ) 2 ( 2  
" " " " )  
" " " " 가 2  
가

20 ( ) 92 115 1  
44 4 가 3 1  
10 3 1  
1 10 " " "  
" , " " " "

21 ( ) 93 1  
1. 93 1 1 :  
가 .  
가  
2. 93 1 2 : 「 」 2 2

가. , . , ,  
. , 가  
. 「 」 2 2 9

3. 93 1 3 : 「 」 2 2

1

22 ( ) 94 1 ( " " )

- 1.
- 2.
- 3.

가 가

「

」 2 1

93

23 ( ) 94 1 ( " " )

가

1

94 2

93

24 ( ) 95

1. 94 1
- 2.
- 3.

1 2

100 50

1 2 25

" " " " " " " " " " , " " " "

25 ( ) 24 2

1. 「 」 2 1
2. 「 」 3
3. 「 」 2 1

4. 「 가 」 5 5 2

5. 「 」 2 3

6. 가

7. . . 가

8. 가

9. . 가

24 2

, 1 8 .

26 ( ) 95 2 2 「

」 2 2 2 (

" " )

27 ( ) 96 2( 115 3 ,

" " " ) 1 2

3 96 2 1 96 2 2

28 ( ) 101 7 가

1. 5 6

2. 가

3.

101 7 가 가

2 가 60

가 ,

60

2 가

가

3

29 ( ) 105 2 4 " " , 「

」 ( )

[ : 2014.12.1.] 29

30 ( 가) 105 2 6 가

가

1 가 60

가 가

60



1 가

2

105 2 6

가

- 1. 가
- 2.
- 3.

[ : 2014.12.1.] 30

31 ( 가 ) 112 2 ( 115 3  
 , " " " )  
 가 「 」 9 1

4

32 ( ) 116 2 93  
 ( 「 」 2 . . ,  
 , , )

- 1. 85 가( 2 7 )
- 2. 86 3 가
- 3. 101 2 7 가 가
- 4. 102 2
- 5. 103 5
- 6. 105 2 6 가
- 7. 108 4
- 8. 111 ( 2 8 )
- 9. 112 가
- 10. 113
- 11. 119

116 3

「 」

20

- 1. 10 4 .
- 2. 10 2
- 3. 10 3
- 4. 12 2
- 5. 49 2( 82 ) 96 2( 115 3 )
- 6. 71
- 7. 85 가
- 8. 111 ( 115 3 )  
 2

9. 114 가

[ : 2014.12.1.] 32 1 6

33 ( ) ( 116 2 • 3 32 가 「

」 19 1 4

1. 56 6

2. 71 1

3. 72 16 3

4. 83 56 2

5. 83 57 2

6. 85 1 114 1 가

7. 86 3 ( 115 3 )

가

8. 101 2 ( 115 3 ) 가

가

9. 101 7 가

10. 102 2 ( 115 3 )

11. 103 5 ( 115 3 )

12. 105 2 6 가

13. 111 ( 115 3 )

14. 112 1 ( 115 3 ) 가

• ( 가 「 」 19 1 4 )

가

1. 15 1

2. 16 2

3. 56 2

4. 57 2

5. 60 2 6

[ : 2014.12.1.] 33 1 12 , 33 2 5

34 ( ) 24

2015 1 1

3

( 3

12 31

)

35 ( ) 119 1 3

---

< 25486 ,2014.7.21.>

1 ( ) 2014 7 22 . , 14 , 15 , 29 , 30 , 32 1 6 ,  
33 1 12 2 5 2014 12 1 .

2 ( ) 3 2017 11  
30 .

3 ( ) 6 17

4 ( ) 「 」 .

가

[별표]

**과태료의 부과기준**(제3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)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
		1차 위반	2차 위반 이상
가.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119조 제1항제1호	100	200
나.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	법 제119조	100	200

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경우	제1항제2호			
다.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1항제3호	100	200	
라.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항(법 제76조·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1호	100	200	
마.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3조제1항(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·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2호	100	200	
바.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46조, 제81조 및 제95조(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조합원	법 제119조 제2항제3호	100	200	

<p>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</p> <p>사.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(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법 제96조제2항(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경우</p>	<p>법 제119조 제3항제2호</p>	<p>50</p>	<p>100</p>
<p>아.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(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법 제49조의2(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법 제96조(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법 제96조의2(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</p>	<p>법 제119조 제3항제3호</p>	<p>50</p>	<p>100</p>
<p>자.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94조를 위반</p>	<p>법 제119조 제2항제4호</p>	<p>100</p>	<p>200</p>

<p>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, 이자율, 대출한도, 상호부조의 범위, 상호부조금,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</p>			
<p>차.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·등기를 게을리한 경우</p>	<p>법 제119조 제3항제1호</p>	<p>50</p>	<p>100</p>
<p>카.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</p>	<p>법 제119조 제3항제4호</p>	<p>50</p>	<p>100</p>
<p>타.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</p>	<p>법 제119조 제3항제5호</p>	<p>50</p>	<p>100</p>